「연방세법: 절차 및 행정」

(제7210조)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미국법전 연방세법 제6편
- **제 정 일**: 1954년 8월 16일
- **개 정 일**: 2019년 7월 1일

원문	번역문[1]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연방세법
Subtitle F—Procedure and Administration	제6편[2] 절차 및 행정
CHAPTER 75—CRIMES, OTHER OFFENSES, AND FORFEITURES	제75장 범죄행위, 그 밖의 위반 및 몰수
Subchapter A—Crimes	제1절 범죄
PART I—GENERAL PROVISIONS	제1관 총칙

[1]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 제1조
(a) → ① 또는 제1항
(1) → 1. 또는 제1호
(A) → 가. 또는 가목
(i) → 1) 또는 가목의 1
(I) → (1) 또는 가목의 1의 1

[2] 보통 원문의 Title을 "편"으로 번역하나, 미국법전 제26편에 해당하는 연방세법 조문의 구분이 Subtitle-Chapter-Subchapter-Part 등 네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의상 이 법의 원문에 등장하는 Subtitle을 "편"으로, 이하 각각을 "장-절-관" 등으로 번역한다.

§7210. Failure to obey summons Any person who, being duly summoned to appear to testify, or to appear and produce books, accounts, records, memoranda, or other papers, as required under sections 6420(e)(2), 6421(g)(2), 6427(j)(2), 7602, 7603, and 7604(b), neglects to appear or to produce such books, accounts, records, memoranda, or other papers, shall, upon conviction thereof, be fined not more than $1,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 year, or both, together with costs of prosecution.	제7210조 소환 불응 제6420조제5항제2호, 제6421조제7항제2호, 제6427조제10항제2호, 제7602조, 제7603조, 그리고 제7604조제2항에 따른 증인 출석 명령 또는 장부, 회계, 기록, 메모 또는 기타문서 제출을 위한 출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장부, 회계, 기록, 메모 또는 기타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및 징역을 병과하며 기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